

코레일네트웍스(주) 채용 결격사유

「인사규정」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 및 임용취소

제13조(채용결격사유 및 임용취소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(미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)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7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8. 비위면직자로 해고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(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함)으로 판명된 자
10.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으로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13. 국가공무원법의 성범죄 기준 적용